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결핵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결핵예방법」이 개정('19.10.31)·공포('19.12.3) 되어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집단으로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집단생활시설 관할기관에 결핵의 집단 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관할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규정의 일부를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결핵예방법」 제10조의2제2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핵의 집단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관할기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에서 결핵이 집단 발생한 경우 해당 학교 또는 유치원을 관할하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및 지방교육지원청
- 사업장에서 결핵이 집단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 군부대에서 결핵이 집단 발생한 경우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군부대를 관할하는 각 군 본부

-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시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결핵이 집단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을 추가하여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등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통보 대상 기관의 범위) 법 제10조의2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핵 발생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에서 결핵이 집단 발생한 경우 해당 학교 또는 유치원을 관할하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및 지방교육지원청
2. 사업장에서 결핵이 집단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3. 군부대에서 결핵이 집단 발생한 경우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군부대를 관할하는 각 군 본부
4.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시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결핵이 집단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의 가목을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로 하고, 현행 가목을 나목으로, 현행 나목을 다목으로, 현행 다목을 라목으로, 현행 라목을 마목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의2(통보 대상 기관의 범위)</u> <u>법 제10조의2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핵 발생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에서 결핵이 집단 발생한 경우 해당 학교 또는 유치원을 관할하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및 지방교육지원청</u> <u>2. 사업장에서 결핵이 집단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u> <u>3. 군부대에서 결핵이 집단 발생한 경우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군부대를 관할하는 각 군 본부</u> <u>4.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u>

산후조리시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결핵이 집단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협회,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및 제6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그 밖에 결핵관리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다음 각 목에 따른 업무

<신 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료 및 투약 등 치료 나.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연구 다. 법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 등 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라.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결핵예방을 위한 교육·홍 보사업 (이하 생략)	<u>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u> <u>나.</u> (현행 가목과 같음) <u>다.</u> (현행 나목과 같음) <u>라.</u> (현행 다목과 같음) <u>마.</u> (현행 라목과 같음) (이하 생략)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2501